제2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 (재정경제부)	1.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등록 · 취소 요건(신설)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등록 요건을 변경·폐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* 의무 부과 * ▲의무확약서 ▲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등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*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근거 마련 * ▲의무확약서 내용 위반 ▲수행 가능한 업무범위 위반 등 2.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운영 과정상 의무(신설) ㅇ 거래상대방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확인 의무 부과 ㅇ 거래내역(통화종류, 결제일자 등) 보고 및 거래 관련 서류 보관(5년) 의무 부과 – 자료 제출 요구(재정경제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) 권한 근거 마련	규제 심사 완료
2	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 추가(강화) ㅇ 전공의가 면허정지 또는 무단결근으로 수련에 불참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규정 – 그 밖에 징계, 면허정지 등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추가 수련을 받도록 규정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시체 해부자의 자격(신설) ㅇ 의과대학 교원의 시체해부자 자격요건 구체화 – 수의학, 의과학, 의생명과학, 생물학 등 해부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– 해부·병리·법의학 과목을 9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관련 연구실적 또는 교육·해부 경력 합산이 4년 이상인 경우	규제 심사 완료
4	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(강화) ㅇ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해부·병리·법의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 2. 시체의 수집 보전 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 구체화(신설) ㅇ 시체를 기증·제공받아 활용하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체 수집·이용 현황 등의 연례 보고 의무 부과 3.허용 범위 외의 시체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신설) ㅇ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교육·연구 외의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(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) 기준 마련	규제 심사 완료
5	여수항 · 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여수항·광양항 수상구역 내 항행 방법(강화) ㅇ 여수항·광양항 내 운항 선박의 자동조타장치 사용을 금지하고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전면 해역에서 대형구조물을 해상 운송하는 예부선에 대한 감속 운항 및 교차 항행 금지 의무 부과	
6	인천항 ·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청라하늘대교 부근 항법(신설) ○ 청라하늘대교 하부를 예인선이 지나는 경우 예인되는 선박은 1척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항행 시 예인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규정 ○ 청라하늘대교 부근 통항시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 「인천항·경인항 선박통항규칙」에서 정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도록 하고 – 청라하늘대교 하부 통항시 500t 초과 선박, 조정 불능선 등 선박의 교차 통항금지 ○ 청라하늘대교 통과 제한 사유* 규정 * ▲ 선박 수면상 최고 높이가 청라하늘대교보다 높은 경우 ▲ 전자해도 장비가 없는 1,000t 이상의 선박인 경우 등 ○ 청라하늘대교 하부에서 교차통항 금지 등으로 일방 통항이 필요한 경우 선박 간 우선순위* 규정 * 먼저 통과 중인 선박 → 높이·폭 제약이 있는 선박 → 그 외 선박	규제 심사 완료